

의안번호	2215685
의 퇴 인	이연희의원
회 답 일	2026.5.13.
추 계 번호	25B7295
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3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등의 적용특례)	국토교통부장관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(제5항 신설)	재량규정
		제5항에 따른 도시혁신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의3제2항·제3항·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·제2항을 준용함. 다만, 같은 법 제40조의3제7항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도시혁신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(제6항 신설)	의무규정 재량규정

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제사유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규정
1	안 제23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등의 적용특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사유

-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시혁신 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, 이를 시행하는 경우 국가산업단지가 도시혁신구역에 지정되는 경우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간재구조화계획¹⁾ 및 도시혁신계획²⁾의 수립, 기초조사 등에 따라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비가 발생할 수 있음
- 그런데 개정안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중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될 단지의 수, 지정 시기, 공간재구조화계획 및 도시혁신계획 수립 범위, 기초조사의 실시 규모 및 사업추진 방식 등이 불확정적이어서, 현시점에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

1) 제35조의2(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)

-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용도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**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.**
 1. 제40조의3에 따른 **도시혁신구역 및 도시혁신계획**(제2호~제4호 생략)
 - ②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과 관련하여 제2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도시·군관리계획"은 "공간재구조화계획"으로 본다.
 - ③ **국토교통부장관**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경쟁력 향상, 특화발전 및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**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.**
 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하려는 국토교통부장관(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. 이하 이 조부터 제35조의7까지에서 같다), 시·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(이하 "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"라 한다)는 공간재구조화계획도서(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및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(기초조사결과·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
2) 제40조의3(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)

- ①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(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4에서 "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권자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 1. 도시·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·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
 2. 주요 기반시설과 연계하여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
 3. 그 밖에 도시공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
- ② 도시혁신계획에는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1. 용도지역·용도지구, 도시·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
 2.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
 3. 건축물의 건폐율·용적률·높이에 관한 사항
 4. 건축물의 용도·종류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
 5. 제83조의3에 따른 다른 법률 규정 적용의 완화 또는 배제에 관한 사항
 6. 도시혁신구역 내 개발사업 및 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에 관한 사항
 7. 그 밖에 도시혁신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(이하 생략)

○ 다만,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에 따른 유사사례사업비는 다음과 같이 참고할 수 있음

- 경기도 평택시: 평택시 공간재구조화 수립 타당성조사 용역(2026년, 5억원)
- 전라남도 순천시: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수립 용역(2026년, 3.5억원)

□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IV. 부대의견

□ 해당사항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문지은	예승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문지은	02-6788-4645	mtsophia@assembly.go.kr